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468호

2018. 6. 7. (목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서울특별시의회예규]

제123호 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규정 3

[입법예고]

제2018-139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.. 4

제2018-139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 8

제2018-139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9

◆ 고 시

제2018-149호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2

제2018-175호 버스전용차로 변경 고시 55

제2018-177호 세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[기반시설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8

제2018-178호 도시계획시설사업(시민의 숲 근린공원) 실시계획 고시 72

제2018-181호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73

제2018-182호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106

◆ 공 고

제2018-1345호 공영 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116

제2018-1346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18

제2018-1363호 2018년도 제9차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136

제2018-1370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139

제2018-1372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「지역재생활동가 우수 활동사례 공모」 공고140

제2018-137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46

제2018-1374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 공고149

제2018-137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54

제2018-1376호 설계업·감리업 등록 공고159

제2018-1377호 측량업 등록 공고159

제2018-1378호 『상암 택지개발지구내』 디지털미디어시티(DMC) 사업용지 공급 공고160

제2018-138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163

제2018-138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계획 공고163

제2018-138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통지 공시송달 공고173

제2018-1389호 다단계[후원방문]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174

◆ 구 고 시

제2018-47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종로구)177
 제2018-67호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소공원1 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중구)180
 제2018-64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성북구) 185
 제2018-8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강북구) ...186
 제2018-55호 도시관리계획(불광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(은평구)189
 제2018-66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마포구) 191
 제2018-42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동작구)194
 제2018-139호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도서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서초구)197
 제2018-71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송파구)198

◆ 구 공 고

제2018-542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용산구)201
 제2018-541호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(중랑구)202
 제2018-630호 공시송달공고(강북구)205
 제2018-5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(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)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(노원구)206
 제2018-804호 도시계획시설(봉제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강서구)208

◆ 사업소고시

제2018-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212
 제2018-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212
 제2018-1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213
 제2018-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213
 제2018-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214

◆ 사업소공고

제2018-13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(수시분)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(한강사업본부)215
 제2018-13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한강사업본부)223
 제2018-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(강서소방서)224

자치법규

[서울특별시의회예규]

◆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23호

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규정

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양 준 옥^인

2018년 6월 7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·부여할 수 있으며,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적용직종 : 일반직·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
- 2. 대상공무원 :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실 4급(상당) 및 6급(상당) 이하

제3조(대외직명의 선정) ①전문위원실 4급(상당)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,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- ②입법담당관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
- ③예산정책담당관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예산분석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
- ④제3조 제1항, 제2항, 제3항 이외의 6급(상당)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.

제4조(대외직명 활용·관리) ① 제3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, 홈페이지, 명함, 이메일, 감사패, 명패,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·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대외직명의 선정) ① 전문위원실 4급(상당)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, 임기제(나·다급) 공무원(입법지원요원)의 대외직명은 <u>입법조사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입법담당관 임기제 나급 및 다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<u>입법조사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(예산재정정책요원) 중 나급 및 다급의 대외직명은 <u>예산분석관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대외직명의 선정) ① ----- -----,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<u>입법조사관</u>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<u>입법조사관</u>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<u>예산분석관</u>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----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----

1. 개정사유

‘입법조사업무’, ‘예산 및 재정분석업무’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‘입법조사관’, ‘예산분석관’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담당직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,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위원실, 입법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‘입법조사관’을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3조제1항, 제2항)
- 나.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‘예산분석관’을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390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6월 7일
서울특별시장